

증거목록

1.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현장
2. 세계인권선언
3. UN현장
4.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5. 일본민중재판 기소목차와 Q&A
6. 일본군 성노예 전범여성국제법정 판결문
7. 코리아 국제전범법정 판결문
8.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판결
9.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판결
10. 민변 헌법소원 청구서 (2003년)
11.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
12.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의 근거와 대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4)

부시·블레어·노무현의

이라크전쟁범죄와파병에대한민중법정 헌장

서문

부시·블레어·노무현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준비위원회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 그리고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한 이라크 침공이 그 절차와 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불법적 침략전쟁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군 파병이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증거 자료로 남기고,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며, 침공을 주도하고 동참한 국가의 정부들과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고, 전 지구적인 반전 평화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기여하며,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범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전세계 민중법정의 개최를 결의하고 선포한 2003. 5. 25. 자카르타평화선언에 따라 민중의 의지와 힘을 모아 2004년 12월 2일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대한 국제전범 민중 법정 규정'을 채택한다.

제1조(법정의 설립)

이 규정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이하 '법정'이라고 한다)을 설립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간인 : 민간인이란 군대에 속하지 않고,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 그리고 군대와 교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민간인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 ② 민간주민 : 민간주민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민간인을 의미하며, 민간인의 위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이 민간주민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 ③ 민간물자 : 민간물자란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 ? 건물 ? 사업장 ? 시설들을 의미한다.
- ④ 군사목표물 : 군사목표물이란 그 성질 ? 위치 ? 목적 ? 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

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제3조(법정의 관할)

법정은 다음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① 침략범죄

1. 침략의 죄란,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지시할 권한 있는 자 또는 지휘를 실행할 입장에 있는 자에 의해, 국가주권, 영토권, 국가의 정치적 독립 내지 타국인민의 불가침 인권에 대한 위협 또는 침범을 목적으로 타국에 대해 유엔현장에 위반하는 무력행사에 의하여 인민 자결, 자유 및 독립의 권리의 탈취하는 것.

2. 침략을 구성하는 무력행사라 함은,

가. 타국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 또는 공격. 일시적 침공 또는 공격이더라도 당해 침공 또는 공격 결과로 발생한 군사적 점령, 또는 타국 또는 그 일부 영역의 무력행사에 의한 병합

나. 타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중 폭격

다. 무력행사로 타국의 항구 또는 연안을 봉쇄하는 것

라. 무력행사로 타국 육군, 공군, 해군을 공격하는 것

마. 정부간 협정에 의해 주어진 조건에 반해서 타국의 영역 내에서 무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협정의 만료기한이 도과되었으나 타국 영역 내에 계속 주둔하는 것

바. 타국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국의 영역을, 그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행위

사. 한 나라에 의해 또는 한 나라를 위하여, 타국에 대항하여 위에서 열거한 행위나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과 같은 정도의 무력행위를 수행하도록 무장집단, 단체, 비정규군 또는 용병을 파견하는 행위

② 집단살해죄 :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각 호의 행위

1. 집단 구성원 살해

2.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야기

3.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③ 인도에 반한 죄 :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아래 각호의 행위

1. 민간인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규에 위반하여 민간인을 구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6. 고문
7.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매,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8.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사유에 근거한 박해
9. 강제실종
10.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④ 전쟁범죄 :

1. 1949. 8. 12.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각호의 행위
 - 가. 고의에 의한 살해
 - 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 다.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심각한 고통이나 중대한 위해 야기
 - 라.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 마. 포로 또는 민간인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바. 포로 또는 민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 사.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 아. 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
2.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
 - 가. 민간인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나.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시설자재부대 또는 차량으로써,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고의적 공격
 - 다.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 라.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 마.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의 방어수단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또는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 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 표장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 사.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 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 아.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국민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예배장소,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 자. 점령국이 점령국에 의해 파괴된 피점령국의 사회적 기반시설 복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차. 적대 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 카. 적대국 국가나 군대에 속한 개인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타.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 파. 비록 적대 당사국 국민이 전쟁개시 전 교전국에서 복무하였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거.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 너.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 ? 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 더.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다만,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은 포괄적 금지의 대상이어야 한다.
- 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 버.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으로부터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인물의 존재를 이용하는 행위
- 서.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 어.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

걸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3. 민간법정은, 전쟁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77. 6. 9.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4조(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책임)

①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범죄를 공모, 명령, 교사, 실행, 방조, 예비, 음모한 자 및 계획적으로 은폐한 자는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② 국가의 책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정된다.

1.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가 제1항에 정한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비호한 경우
3. 국가가 제2조 각항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4.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국가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

제5조(법정의 구성)

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기소인단, 기소대리인단, 서기로 구성한다.

제6조(재판부의 구성 및 역할)

① 재판부는 수석판사 1인과 판사 4인으로 하고, 법정준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재판부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 자
3. 형사법 및 국제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재판부는 법정의 진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배심단원의 구성 및 역할)

① 배심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판부의 합의로 선정한다.

② 단장을 포함한 1/2은 법정준비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들 가운데 선정하고, 나머지 배심원은 지원자들 가운데서 선정하되, 성별, 연령, 직업 및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 선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기소인단의 구성 및 역할)

- ① 기소인단은, 전쟁과 과병에 반대하고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국제법위반과 전쟁범죄로 기소하고자 법정준비위원회에 기소장을 제출한 시민으로 구성된다.
- ② 기소인단은 이 규정 제2조에 정한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판결을 집행한다.

제9조(기소대리인단의 구성 및 역할)

- ① 기소대리인단은 3인 내외로 하고, 법정준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② 기소대리인단은 제5조 제2항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기소대리인단은 기소인단을 대리하여 이 규정 제2조에 정한 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판결을 집행한다.

제10조 (서기의 구성 및 역할)

- ① 서기는 약간명으로 하고, 법정준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② 서기는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법정의 행정과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재판의 진행)

- ① 재판은 공개한다.
- ② 재판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고, 재판진행상 필요에 따라 통역인을 둔다.

제12조 (증거채택과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

- ① 재판부는 합의에 의하여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실시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의 보호 기타 필요한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사실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 공문서, 사문서 등 각종 문서.
 2. 사진, 녹음테이프, 영상물 등 각종 시청각자료.
 3. 피해자, 관련자 및 전문가의 증언. 단, 이들이 법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에 의하여 영상증언으로 할 수 있다.
 4. 기타 사실인정에 관련된 유형물.

제13조 (증거조사의 특례)

- ① 공지의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재판부는 법정의 설치국가를 포함한 5개국 이상의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된 사실에 관하여 공지의 사실로 결정할 수 있다.

(3) 배심원단은 전체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정으로 공지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4)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제3항에 따라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의 인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피고인의 권리보장)

①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이 요청할 경우 그의 안전과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판결)

①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유무죄 및 당사국의 국가책임 유무에 관하여 출석 배심원의 과반수로써 평결한다. 다만, 그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의거하여 피고인 및 당사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시효) 제2조에 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효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문서의 보존) 법정준비위원회는 이 법정에서 사용된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 (다른 조약 및 국제법 원칙과의 관계) 이 규정의 어느 조항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1977년에 제정된 위 제네바 4개 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 1954년 제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전시문화보호협약(헤이그협약),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 및 이전금지와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 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이루는 기타 국제조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 원칙을 결코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파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도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 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체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접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I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유엔헌장 한글판. 서울대도서관판.

UN헌장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안겨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보다 큰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수락하고 방법을 설정함으로서 확보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구를 이용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헌장에 동의하고, 이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

제1장 목적과 원칙

제2장 회원국의 지회

제3장 기관

제4장 총회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조치

제8장 지역적 약정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제10장 경제사회 이사회

제11장 비 자치지역에 관한선언

제12장 국제신탁총치제도

제13장 신탁통치이사회

제14장 국제사법 재판소

제15장 사무국

제16장 잡 칙

제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18장 개정
제19장 비준 및 서명

제 1 장 목적과 원칙

제 1 조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 및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 한다.
2.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 2 조

유엔 및 그 회원국은 제 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및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조치에 있어서 모든 원조를 다하며, 유엔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한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 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국의 지위

제 3 조

유엔의 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현장에 서명하고, 제 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제 4 조

1. 유엔의 회원국 지위는 이 현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유엔이 판단하는 모든 평화 애호국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유엔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정보장이사회에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제 5 조

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정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 6 조

이 현장에 규정된 원칙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전 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7 조

1. 유엔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안정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현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 8 조

유엔은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남녀가 어떠한 지위에라도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제 4 장 총 회

구 성

제 9 조

1. 총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 인 이하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 및 권한

제 10조

총회는 이현장의 범위안에 있거나 또는 이 현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 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유엔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 11조

- 총회는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의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총회는 유엔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 35조 제 2항에 따라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 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마다 총회에 통고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항의 취급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유엔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제 13조

-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 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하는 것
- 전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추가적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 14조

제12조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총회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 복지 또는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도 이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태는 유엔의 목적 및 원칙을 정한 이 현장규정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태를 포함한다.

제 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 한다. 이보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유엔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 16조

총회는 제 12장과 제 13장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신탁 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 협정의 승인을 포함한다.

제 17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어떠한 재정약정 및 예산 약정도 심의하고 승인하며, 당해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기구의 행정적 예산을 검사한다.

표결

제 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경제 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선출, 신회원국 유엔가입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3.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적 부문의 결정을 포함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 19조

유엔에 대한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유엔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의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 20조

총회는 연례정기회의 및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회의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유엔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 2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5 장 안정보장이사회

제 23조

1. 안정보장이사회는 15개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국, 프랑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정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목적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유엔 회원국을 안정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정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정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중 2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정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 24조

1. 유엔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정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정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정보장이사회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정보장 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 12장에 규정된다.
3. 안정보장이사회는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제 25조

유엔회원국은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현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제 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준비를 위하여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

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결

제 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서 한다.
3. 그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절차

제 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 한다.

제 3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유엔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토의에도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 32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유엔회원국 또는 유엔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 6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33조

- 어떠한 분쟁도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 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이나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 35조

- 유엔회원국은 어떠한 분쟁, 또는 제 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 할 수 있다.
- 이 조에 의하여 주의가 환기된 사항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6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분쟁해결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 37조

-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38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7장 평화에 대한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조치

제 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 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

제 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별 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으로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 보장이사회와 회원국 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 4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 대표가 없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관된 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

국을 초청한다.

제 45조

유엔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 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요구,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 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 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 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유엔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지역기구 와 협의한 후 지역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엔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 진다.
2. 그러한 결정은 유엔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유엔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 49조

유엔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0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엔회원국 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를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1조

이 현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이현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장 지역적 약정

제 52조

1. 이 현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유엔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 5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제 9 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제 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 56조

모든 회원국은 제 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유엔과 협력 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 57조

1.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과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2. 이와 같이 유엔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 58조

유엔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제 59조

유엔은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관계국간의 교섭을 발의한다.

제 60조

이 장에서 규정된 유엔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위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관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제 10 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 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제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 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추가의 27개 이사국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의 말에 종료되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의 말에 종료된다.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임무와 권한

제 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 다.

4. 이사회는 유엔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3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유엔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4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 여진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유엔회원국 및 전문기구 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의견을 총회에 통보 할 수 있다.

제 65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조한다.

제 66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이사회는 유엔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거나 총회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과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표 결

제 67조

-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절 차

제 6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 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유엔회원국에 대하여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 7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이사회의 심의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기 위한 약정과 이사회의 대표가 전문기구의 심의에 참가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제 7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의 선정방법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동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소집의 규정을 포함한다.

제 11 장 비 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제 73조

주민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시정의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맡는 유엔회원국은, 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이 현장에 위하여 확립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체제안에서 최고도로 증진시킬 의무와 이를 위하여 다음을 행할 의무를 신성한 신탁으로서 수학한다.

가. 관계주민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 공정한대우,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한다.

나. 각 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그들의 서로다른 발전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달시키고, 주민의 정치적 소망을 적절히 고려하며, 또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점진적 발달을 위하여 지원한다.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한다.

라. 이 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적 및 과학적 목적을 실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발전조치를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상호간 및 적절한 경우에는 전문적 국제단체와 협력한다.

마. 제12장과 제13장이 적용되는 지역외에 위의 회원국이 각각 책임을 지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건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통계 및 다른 자료를, 안전보장과 헌법상의 고려에 따른 필요한 제한을 조건으로하며, 정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송부한다.

제 74조

유엔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 그 본국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가지

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이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에,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관하여 선린 주의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또한 동의 한다.

제 12 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 75조

유엔은 금후의 개별적 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하여 그 권위하에 국제신탁통치제도를 확립 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탁통치지역이라 한다.

제 76조

신탁통치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유엔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관계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 협정의 조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전세계 사람들의 상호의존의 인식을 장려하는 것

라. 위의 목적 달성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8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유엔회원국 및 그 국민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항에 대한 평등한 대우 그리고 또한 그 국민을 위한 사법상의 평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것

제 77조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 2 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2.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제 78조

유엔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 제도는 유엔회원국이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9조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되는 각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의 조항은, 어떤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직접 관계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제 83조 및 제 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다. 이 직접 관계국은 유엔 회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수임국을 포함한다.

제 80조

-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현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국가 또는 국민의 어떠한 권리, 또는 유엔 회원국이 각기 당사국으로 되는 기존의 국제문서의 조항도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의 지체 또는 연기를 위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1조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에 있어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조건을 포함 하며,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을 행할 당국을 지정한다. 그러한 당국은 이하 시정권리자라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자체일 수 있다.

제 82조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 있어서도 제43조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협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협정이 적용되는 신탁통치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 83조

- 전략지역에 관한 유엔의 모든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 제76조에 규정된 기본목적은 각 전략지역의 주민에 적용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략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사항에 관한 신탁 통치제도하의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이사회의 원조를 이용한다.

제 84조

신탁통치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시정권자의 의무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시정권자는 이 점에 관하여 시정권자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한 지역적 방위 및 신탁통치지역안에서의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탁통치지역의 의용군, 편의 및 원조를 이용 할 수 있다.

제 85조

-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협정과 관련하여 유엔의 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그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총회가 수행한다.
- 총회의 권위하에 운영되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를 원조한다.

제 13 장 신탁통치이사회 구성

제 86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유엔회원국으로 구성한다.
 - 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회원국
 - 나.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지 아니하나 제23조에 국명이 언급된 회원국
 - 다. 총회에 의하여 3년의 임기로 선출된 다른 회원국, 그 수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총수를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유엔회원국과 시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간에 균분하도록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로 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 한 자격을 가지는 1인을 지명한다.

임무와 권한

제 87조

- 총회와, 그 권위하의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하는 것.
 - 나. 청원의 수리 및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
 - 다. 시정권자와 합의한 때에 각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 라.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제 88조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며, 또한 총회의 권능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지역의 시정권자는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연례 보고를 행한다.

표 결

제 89조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절 차

제 90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한다.

제 91조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전문기구가 각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구의 원조를 이용한다.

제 14 장 국제사법재판

제 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현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93조

1.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2.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 94조

1. 유엔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5조

이 현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이 그들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96조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유엔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장 사무국

제 97조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

제 98조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 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한다.

제 99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00조

-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 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 각 유엔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책임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101조

-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사무국 의 일부를 구성한다.
-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 성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제 16 장 잡 칙

제102조

- 이 현장이 발효한 후 유엔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 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103조

유엔회원국의 현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현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제104조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

제105조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2. 유엔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유엔회원국에게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7 장 과도적 안전보장 조치

제106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43조에 규정된 특별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 10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는 그 선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 조치를 기구를 대신하여 취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필요한 경우 다른 유엔회원국과 협의한다.

제107조

이 현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현장 서명국의 적 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8 장 개정

제108조

이 현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현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9조

1. 이 현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유엔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유엔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현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현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한다.
3. 그러한 회의가 이 현장의 발효 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 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제 19 장 비준 및 서명

제110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 된다.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각 기탁을 통고 한다.
3. 이 헌장은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영국과 미합중국 및 다른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비준서 기탁 의정서는 발효시 미합중국 정부가 작성 하여 그 등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유엔의 원회원국이 된다.

제111조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헌장의 인증 등본은 동 정부가 다른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사십오년 유월 이십육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작성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전문

이 규정의 당사국들은,

모든 국민들은 공동의 유대로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는 공유의 유산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섬세한 모자이크는 어느 때라도 깨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세기동안 수백만의 아동·여성 및 남성이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하기 어려운 잔학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왔음에 유념하며,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초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국가의 국내문제 또는 무력충돌에 간섭할 권한을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목적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국제연합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독립적인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과 그 집행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재판소의 설립

제1조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

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재판소의 관할권과 기능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조

재판소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협정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다.

제3조

재판소의 소재지

1.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의 헤이그로 한다.
2. 재판소는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본부 협정을 소재지국과 맺는다.
3.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 또한 재판소는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2. 재판소는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여하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가. 집단살해죄
 - 나. 인도에 반한 죄
 - 다. 전쟁범죄
 - 라. 침략범죄
2.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국제연합헌장의 관련 조

항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집단살해죄

이 규정의 목적 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 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살해
 - 나. 절멸
 - 다. 노예화
 -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 바. 고문
 -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 · 인종적 · 국민적 · 민족적 ·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 차. 인종차별범죄
 - 카. 신체 또는 정신적 ·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2. 제1항의 목적 상,
-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나. "절멸"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

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다. "노예화"라 함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 하에 있거나 통제 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킨 여성의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임신과 관련된 각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규정의 목적 상, "성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이와 다른 어떠한 의미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이 규정의 목적 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 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고의적 살해
- (2)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 (3)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 (4)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 (5)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 (7)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 (8) 인질행위

나.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 즉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

-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것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 (4)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 (5)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 · 촌락 · 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 (6)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7)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표장 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 (8)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 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 (9)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 · 교육 · 예술 · 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 (10) 적대 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 · 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결단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 (11) 적대국 국가나 군대에 속한 개인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12)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 (13)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 (14) 적대 당사국 국민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 정지 또는 불허된다는 선언
- (15) 비록 적대 당사국 국민이 전쟁개시 전 교전국에서 복무하였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6)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17)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 (18)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 (19) 총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과 같이,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 (20)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다만,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은 포괄적 금지의 대상이어야 하며, 제121조와 제123조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22)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 제2항 바호에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 (23)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으로부터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인물의 존재를 이용하는 행위
- (24)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 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5)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6)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군대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 (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3) 인질행위
- (4)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 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라. 제2항 다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여타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

-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2)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

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 (4) 군사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 · 교육 · 예술 · 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 (5)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7조 제2항 바호에서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여하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 (7)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 (8) 관련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요한 군사적 이유 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하는 행위
- (9) 상대방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 (10)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 (11) 충돌의 타방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이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 (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바. 제2항 마호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마호는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간 또는 무장집단들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3. 제2항 다호와 마호의 어떠한 조항도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통일과 영토적 일체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범죄구성요건¹⁾

1. 범죄구성요건은 재판소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조한다. 이는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2.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가. 당사국

1) <편집자 주> 여기에서 '범죄구성요건'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구성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6-8조의 정의되고 있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당사국들의 합의(3분의2에 의한 다수결)를 의미한다. 즉, 여기에서의 '범죄구성요건'이란 로마규정의 하위협정을 의미하는 것이다.